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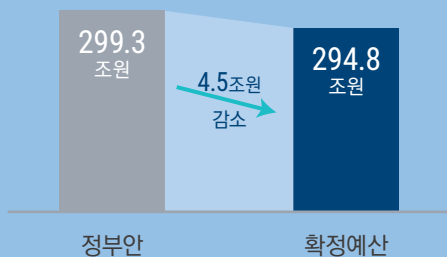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소득법인세분석과

“ 2018 정기국회는 총 21개의 개정세법을 12월 7~8일에 걸쳐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이뤄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수입예산 299.3조원 중 4.5조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어 2019년 국세수입예산은 294.8조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주요 감액 항목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중 인상(-3.3조원), 유류세 15% 인하 효과 반영(약 -1.3조원)등 예산안 제출 후 발표된 정부대책이 반영된 것임. ”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심사 쟁점에 대해 살펴봄

국회 심의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3대 주요 개정항목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3.2조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11%→15%) -3.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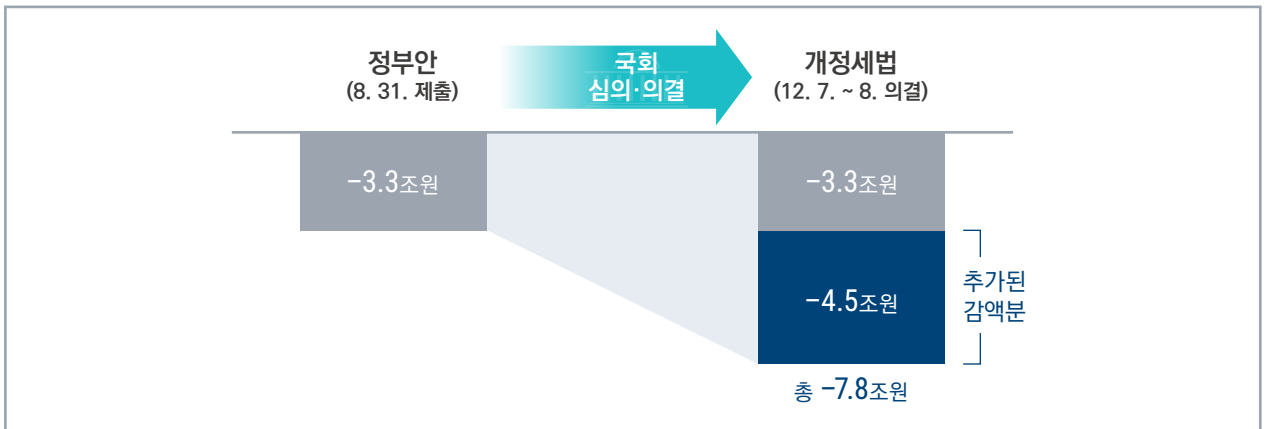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1.2조원

I. 2019 확정 국세수입 예산

1. 개정세법의 세수효과: 정부안 vs 개정세법

개정세법의 영향으로 2019년 국세에 총 -7조 8,126억원의 감소 효과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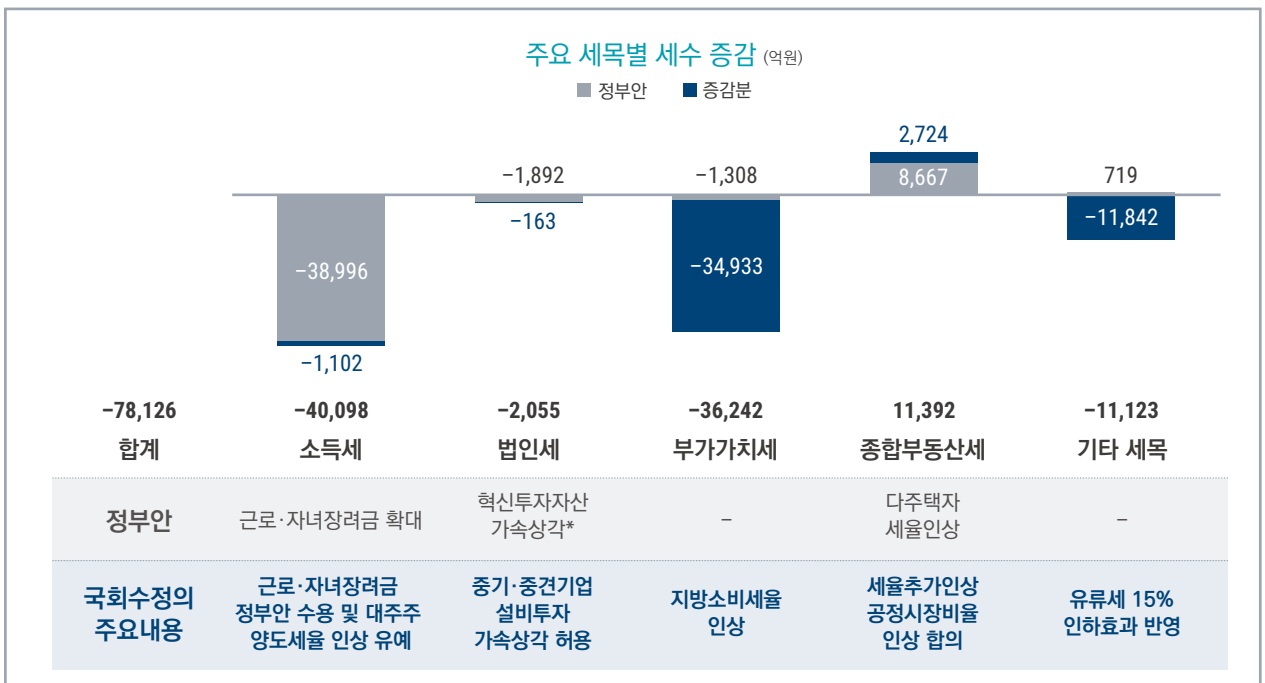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3조 2,810억원이었으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4조 5,316억원이 추가로 감소하였음



*주: 개정세법을 반영한 2018년 대비 세수효과임

2. 세목별 세수효과 증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시행령에 의한 유류세 한시적 15% 인하조치 반영이 이뤄져 정부안 대비 국세수입 감소 요인 발생



*가속상각: 기업의 투자액을 연도별로 배분하여 비용처리시, 투자 초년도의 비중을 확대하여 투자액의 조기 회수를 지원하는 방법

II.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종합부세 과세 강화



발전용 연료 세율 조정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및 요건 완화
-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기초생보 생계급여수급자 지급대상에 반영

세수효과 연평균 -2.6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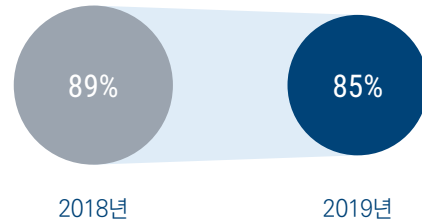
	현행(2018)	정부안
연령요건	30세이상	폐지
소득요건 (단독/홀벌이/맞벌이)	1,300/2,100 /2,500만원	2,000/3,000 /3,60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단독/홀벌이/맞벌이)	85/200/250만원	150/260/300만원
최대지급액 구간	600~1,300만원	400~1,700만원
지급시기	다음연도 1회	당해연도 반기별(2회)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비중을
11%에서 15%로 인상함에 따라
국세 부가가치세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세수효과 연평균 -3.5조원

부가가치세의 비중



*국민의 전체 세부담에는 변동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주택(6억원 초과) 및 종합합산토지 기본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0.3%p 추가과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단계적 인상

세수효과 연평균 +1.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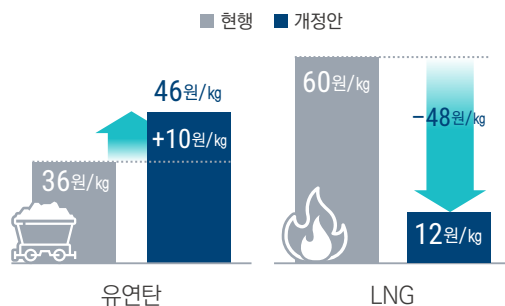
9.13. 대책		+0.1~0.4%p ↑	
정부안	3주택 초과	+0.3%p 추가	+0.25~1%p ↑
	2주택 이하	+0.1~0.5%p ↑	
	주택 (과표 6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

*실거래가 환산: 1주택 23억원, 다주택 1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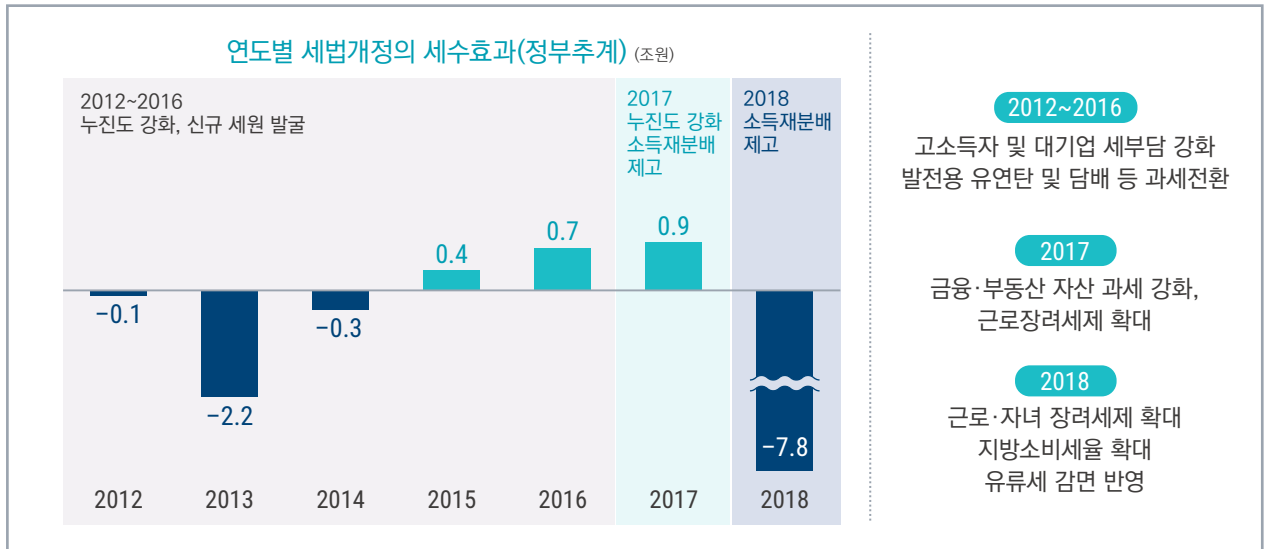
발전용 연료 세율 조정

유연탄 세율은 인상하고 LNG 세율을 인하하여
대기오염물질 환경비용을 제세공과금에 반영

세수효과 연평균 +0.1조원



III. 2018 세법개정 특징



*주: 연도는 세법개정이 이뤄진 연도 / 자료: 정부 각연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및 세입예산안과 본예산의 차액

IV. 향후 논의 과제 (주요 부대의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연장	유류세의 환경비용 고려
정책목표가 달성 vs 보편적 제도로 정착 필요성,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	- 발전용 연료 세율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할 것 - 간접세 감면대상 석유류의 대기오염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연장여부를 검토할 것

V. 확정된 2019년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